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62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개요	3
2.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 물의 정제련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추가(송재봉의원안)	8
3. 적용기한 연장(송재봉의원안)	14

I. 개요

1.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6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12. 26.
- (3) 회 부 일 : 2025. 12.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취득을 위한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차전

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5).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개요

□ 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¹⁾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²⁾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이를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투자·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것임.

동 제도의 적용대상은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①과 ②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임.³⁾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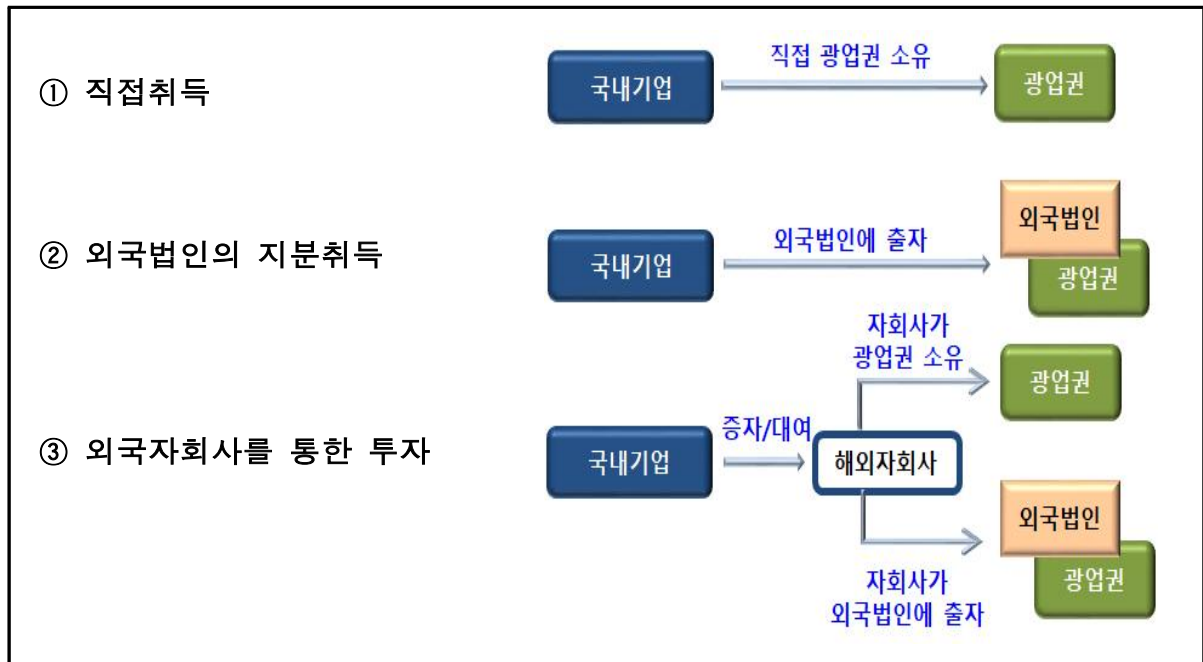
2.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광업권은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를 의미하며,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권리를 의미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유형]



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그리고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또는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음.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7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다가 2013년에 일몰이 도래하였는데,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었음.

정부는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무리한 투자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공기업 부실 등으로 이어져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축소, 광물공사 자원개발 중단 등 공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가 감소하였음.⁵⁾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융자지원 예산 감액 등 정부 지원 축소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유인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5) 유전개발출자(억원): ('12)6,903 → ('16)300 → ('20)135 → ('22)376 → ('23)301 → ('24)481
광물자원공사출자(억원): ('13)1,800 → ('17)300 → '19년 이후 자원개발출자 0

이 더욱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2021년 기준 전체 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63억 2,300만 달러에서 23억 9,200만 달러로 △62.1% 감소한 가운데, 석유·가스는 △56.1%, 일반광물은 △75.9% 감소하였음.⁶⁾

또한, 석유가스·광물 분야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은 2013년 536개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3년 387개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그리고 신규투자도 2008년 107건에서 2022년 5건, 2023년 2건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현황]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석유,가스	193	182	166	141	131	122	119	118	110	105	100
일반광물	343	345	334	335	322	316	308	301	291	289	287
합계	536	527	500	476	453	438	427	419	401	394	387

자료: e-나라지표

해외자원개발 지표로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자원개발률’이 사용되는데, 2023년 기준 석유가스의 자원개발률은 11%이며, 6개 전략광물인 유연탄은 40%, 우라늄 0%, 철 37%, 동 12%, 아연 23.4%, 니켈 43.3%임

6)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글로벌 자원전쟁 시대,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효율화 방안’, 2023. 6.

[자원개발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석유,가스	14	14	16	15	13	13	13	12	11	11	11
유연탄	56	55	53	50	38	30	32	34	41	40	40
철	22	18	15	28	26	32	32	34	34	43	37
동	11	11	6	7	8	8	10	12	8	10	12
아연	21.2	21.5	21.2	22.8	20.6	19.9	20.7	21.5	21.6	19.4	23.4
니켈	45.8	61.7	68.9	63.2	61.8	55.2	55.0	47.2	44.8	44.0	43.3

자료: e-나라지표

참고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실적은 887억 6,300만 달러(석유가스 682억 4,000만 달러, 일반광물 205억 2,300만 달러)이며, 이중 629억 7,800만 달러(석유가스 503억 2,500만 달러, 일반광물 126억 5,300만 달러)를 회수하였음.

2.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추가(송재봉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5)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요건: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 <신 설> ○ 공제율: 3% ○ 사후관리: 세액공제액 등 추정 -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 과세특례 대상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추가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사후관리: 세액공제액 등 추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송재봉의원안 2025. 12. 26. 발의(의안번호 15629)

□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이하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추가하는 한편,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 이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화학적 에너지 저장장치를 의미함.

이차전지는 전기자동차 등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저장과 이동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차전지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0년 약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⁷⁾

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25. 9.

□ 이차전지의 주요 원자재로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인조흑연 등이 있음.

중국은 리튬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 자원의 부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코발트, 니켈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정제 및 제련 등 가공과정을 거쳐 이차전지 소재로 공급하고 있음.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중국을 배제한 자원 공급망을 재편중임.

한편, 산업통상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여 공급망 리스크와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 33종의 핵심광물⁸⁾을 선정하였고, 핵심광물을 비롯한 핵심자원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공급망 관리를 도모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5년 2월부터 시행중임.

□ 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⁹⁾가 해외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¹⁰⁾을 취득하는 투자

8)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족(2종),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롬,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

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10) 광업권은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를 의미하며,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권리를 의미함

또는 이를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하여 투자·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2007년 최초 도입 이후 2013년 일몰되었으나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안은 이러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및 출자에 한정되어 있어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시설을 신설 및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으로, 니켈, 리튬 등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원의 공급망이란 자원의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 등 국내외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 세액공제는 자원의 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확보한 이후 전환·가공하는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의 조문에 따르면 광물의 정제련시설에 대한 신설 및 취득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다소 제한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

특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¹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은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전제로 함¹²⁾.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④ (생략)

1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①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기술용역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

즉, 현행 법령 및 개정안에 따르면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지 않고 광물의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는 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¹³⁾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시설 투자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54

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4. 개발자금융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발자금 융자의 필요성 및 개발자금융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것

② (생략)

13) 산업통상부도 동일한 의견임.

3. 적용기한 연장(송재봉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 104조의15)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요건: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 ○ 공제율: 3% ○ 사후관리: 세액공제액 등 추정 -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사후관리: 세액공제액 등 추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송재봉의원안 2025. 12. 26. 발의(의안번호 15629)

□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2022년 8월)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자금 조달 애로’가 30.8%로 가장 많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¹⁴⁾

둘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법인세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 기업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자원 수급·가격, 국가리스크, 환율 등 다양한 리스크를 갖고 있으며, 투자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세제지원으로는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업은 세제지원 적용기한의 연장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시그널로 인지하여 투자유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2022년 8월)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국가 정책 기

14) 한국경제인협회,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 2022. 8.

조의 잦은 변화'가 46.2%로 가장 많았음.¹⁵⁾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유사한 목적의 재정사업이 진행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2025년 예산 390억원, 2026년 예산 710억원)을 통해 민간의 탐사·개발·생산사업 등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음.

특히 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 제도가 운영되어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고, 실패 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됨.¹⁶⁾

또한, 2024년 11월부터 융자대상사업 중 정책적 중요사업(사업운영권 확보, 자원 국내 도입 가능 사업, 전략·핵심광물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최대 융자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되었고, 특별융자 감면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되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둘째, 해외자원개발 과세특례는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므로 동 제

15) 한국경제인협회,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 2022. 8.

16)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3조(특별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도의 정책효과, 지출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세특례 평가를 거친 이후에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